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행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등의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이관함에 따라 개정 생협법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신청, 신고 등의 제출·처리 기관을 개정법에 맞추어 변경한다. 현행 법령상 공정위가 처리하도록 규정된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인가 및 사업 승인 등의 사무를 중기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정비하였다.

둘째,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한다. 현행 법령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서식과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한 사항 등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법에 따라 위의 사항들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다.

셋째, 그 밖의 법령상 권리·의무의 주체와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한다. 법정 사무의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중기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신청,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에서 제출처와 처리기관을 중기부로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정된 생협법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중기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입법·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누리집(<http://www.ftc.go.kr>→ 소식·뉴스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13일 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준정관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23일까지 ①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우: 30108)

* 팩스: 044-200-5232

* 전자우편: songjg59@korea.kr

담당 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홍근 (044-200-4430)
		담당자	사무관	송진규 (044-200-4432)

현행	개정안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그 밖에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서류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u>총리령</u> 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보건·의료조합의 의
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
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
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
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
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
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
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
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
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 라. (생략)

마. 그 밖에 보건·의료조합
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
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

제10조의3(보건·의료조합의 의
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 중소벤처기업
부령-----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보건·의료조합의 경
영공시)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중소벤처기업부령

는 사항 3. (생략) ② (생략) ③ <u>공정거래위원회</u>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u>총리령</u>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u>총리령</u>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공정거래위원회</u>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u>공정거래위원회</u>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생략)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은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 ---. 1. ~ 3. (현행과 같음) ④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은 ----- ----- ----- -----. 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의료조합”은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③ -----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

1. ~ 3.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

-----.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u>공정거래위원회</u> 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은 ----- ----- ----- ----- ----- ----- -----.

현행	개정안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영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2조의2(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 ----- ----- -----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② (생략)	제5조(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 <u>중소벤처기업부령</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	제5조의2(보건·의료조합의 의료

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의3(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영 제10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3. (생략)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5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제15조제2항”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영 제6조제1항”은 “영 제17조제1항”으로,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7조제3항”은 “영

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

---중소벤처기업부령-----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3(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 -----
--중소벤처기업부령-----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①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

②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제17조제2항”으로 본다.	-----.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생 략)	제10조(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 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u>공정거래</u> <u>위원회</u> 에 신고해야 한다.	② ----- ----- ----- ----- ----- <u>중소벤처</u> <u>기업부장관</u> 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 은 “법 제69조”로, “조합”은 “연 합회”로, “시·도지사”는 “ <u>공정</u> <u>거래위원회</u> ”로 본다.	제11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① ----- ----- ---. ----- ----- ----- “ <u>중소벤</u> <u>처기업부장관</u> ”으로--.
②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3조제2항”은 “법 제80조”로, “조합”은 “전국연합 회”로, “시·도지사”는 “ <u>공정거</u> <u>래위원회</u> ”로 본다.	② ----- -----. ----- ----- ----- “ <u>중소벤</u> <u>처기업부장관</u> ”으로----- -----.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연합회의 청	제12조(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① -----

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본다.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
②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도지사”는 “<u>공정거래위원회</u>”로 본다.	②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으로----- -----.

현행	개정안
제14조(탈퇴) ① (생략)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2. (생략) 3. <u>금치산자</u>	제14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u>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u> 2. <u>한정치산자</u> 3. ~ 7. (생략) ② · ③ (생략)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1. <u>피성년후견인</u> 2. <u>피한정후견인</u> 3.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사업의 종류) 연합회는 그	제55조(사업의 종류)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 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u>공정거 래위원회</u>의 승인을 얻은 사업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중소벤 처기업부장관</u>-----
--	---